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2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과 용어 정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사용료 감면 확대·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별표 2,3의 비교)
-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정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높여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을 구체화하고 시설의 사용, 강습프로그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이 명확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및 안 별표 2,3의 비교란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학교의 체육활동 5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30% 감면 등 감면 대상을 확대, 재정비함.
 - 안 별표1은 환경개선에 따른 체육시설 규모와 주요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안양천 체육시설 규모 축소는 축구장 3면 중 1면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것에 기인함.
 -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1조는 기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약칭 사용 등으로 조문을 간결히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감면대상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 내 체육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명확화(안 제1조, 2조)
- 나. 공공체육시설 구민 감면 신설 및 사회적약자 등 감면 확대(안 제9조, 별표 2,3의 비교)
- 다.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관련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감면 규정 정비(안 제5조, 제9조, 별표 2,3의 비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9. 22.~10. 1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등포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영등포구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영등포구의**”를 “**구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등포구가**”를 “**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제9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1의 안양천 체육시설의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23.10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게임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2면
--------------------------	---------	---

별표 1의 우수지 체육시설의 신길 우수지의 주요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목적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

별표 2 ○ 개인사용료 비고란 제2호 중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란 제7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사용료 등”을 “수강료 등”으로 한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별표 2 ○ 전용사용료 비고란 제3호 중 “각종행사 개최시”를 “각종 행사 개최 시”로 하고, 같은 란 가목 중 “영등포구”를 “구”로, “구청장기”를 “구청장기(배)”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를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로, “협회별”을 “단체별”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4호 중 “각종행사 개최시”를 “각종 행사 개최 시”로 하며, 같은 란 가목 중 “영등포구”를 “구”로, “구청장기”를 “구청장기(배)”로,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를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로, “협회별”을 “단체별”로 한다.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로 한다.

5.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u>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3. ~ 6. (생략)</p> <p><u><신설></u></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p>	<p>제1조(목적) ----- ----- -----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 선용</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 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p>

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
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
포구의 행사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
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
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

3.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
종 경기대회 및 행사

5.·6. (생략)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

-----.

1.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2. -----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3. 구 -----

4. -----
-----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
음)

② -----

----- 구민-----

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및 경기

2. 3. (생략)

4. 삭제

5.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된 자가 별표 3의 대림운동장 축구장,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사용할 때

6. 영등포구 대표선수가 해당종목의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 구의

2. 3. (현행과 같음)

5. 구가 -----

6. 구 -----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함께 오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
상의 노인(다만, 65세가 되
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
터 적용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
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
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

<삭 제>

따른 수급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
인

5.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
모와 그 자녀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대립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이하 사용료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
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
용할 때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
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
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삭 제>

<삭 제>

③ -----
-----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
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
용하여 감면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별표1]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안양스카이트랙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3면
유수지 체육시설	신길 유수지	3,679㎡	조깅트랙 1면 베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별표2]

○ 개인사용료 비교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 비교

----- 사용
허가-----.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1]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23,10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게임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2면
유수지 체육시설	신길 유수지	3,679㎡	다목적트랙 1면 베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

[별표2]

○ 개인사용료 비교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 비교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 가.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3]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사용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별표3]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